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447

2024. 6. 11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4. 5. 31. / 이경숙 의원 등 12명
나. 회부일자: 2024. 5. 31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남양주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, 세부적으로는 용어 정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.

나. 주요내용

-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함. (안 제3조)
○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. (안 제5조, 제6조)
○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. (안 제1조, 제2조, 제 4조,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-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4. 질의·답변요지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